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시행령은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를 3급 직원의 경우 1년, 4·5급 직원의 경우 각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3·4·5급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모두 1년씩 상향함으로써 단기간 성과에 따른 승진보다는 근속 기간 중 충분히 검증된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속도를 조절하여 경쟁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안정성·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의 퇴직 시기를 늦춰 정보기관의 조직역량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안 제12조의2)

- 3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급 및 5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승진 선발위원회의 선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급: <u>1년</u> 이상 2. 4급: <u>4년</u> 이상 3. 5급: <u>4년</u> 이상 4. ~ 6.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 ----- -----. 1. ---- <u>2년</u> --- 2. ---- <u>5년</u> --- 3. ---- <u>5년</u>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연 락 처	(02) 2197 - 9166